

전주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단1875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효영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운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1,262,483원 및 그 중 71,262,483원에 대하여 2021. 6. 9.부터 2021. 8. 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9. 3. 접수 제97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아래 [표1]과 같이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C은행 전주에코시티, C은행 전북혁신도시에서 각 대출을 받았다.

[표1: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순번	보증번호	약정일자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보증비율(%)	대출금융기관
1	D	2018. 11. 30.	2026. 11. 29.	30,600,000	90	C은행 전주에코시티
2	E	2020. 4. 6.	2025. 3. 20.	50,000,000	100	C은행 전북혁신도시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만일 피고 A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하여 대출금융기관에게 각 채무를 변제하면,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완제일까지는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대위변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대지급한 비용을, ③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여 기한 내에 그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하는 각 소정의 요율에 의한 금원을,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도록 사전구상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 A에 대하여 2021. 3. 3.경 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1. 6. 9. 대출금융기관에 합계 72,845,591원(=22,621,619원+50,223,97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래 [표2]와 같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현재 연 9%이다.

[표2: 구상채권의 상세 내용][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 변제일	대위 변제금(㉑)	회수금(㉒)	구상채권잔액(㉓=㉑-㉒)	채당 금(㉔)	미수보 증료(㉕)	확정손 해금(㉖)	합계(=㉓+ ㉔+㉕+㉖)
1	E	2021. 6. 9.	50,223,972	1,332,600	48,891,372	0	0	328	48,891,700
2	D	2021. 6. 9.	22,621,619	250,508	22,371,111	0	0	61	22,371,172
합계			72,845,591	1,583,108	71,262,483	0	0	389	71,262,872

마. 피고 B는 피고 A이 운영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F세차장에서 2019. 12.경까지 세차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2019. 9. 10.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거주를 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20.1. 13.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난소암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020. 2. 18. 54,600,000원, 2020. 3. 2. 43,026,868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피고 B는 피고 A에게 2020. 3. 15. 200만 원, 2020. 3. 22. 3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던 중 피고 A이 2019. 5. 3.경 83,768,00원에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8,5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매매대금 8,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500만 원을

제외하고 2020. 8. 27. 피고 A에게 1,000만 원, 2020. 8. 31.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9. 3. 접수 제973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구상채무 잔액 및 확정손해금 등 합계 71,262,872원 및 그 중 구상채권 잔액 합계 71,262,483원(= 순번 1번 구상채권잔액 48,891,372원 + 순번 2번 구상채권잔액 22,371,1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8.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2020. 8.경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이 2020. 8. 31.경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은 2020. 9. 2.경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를 연체한 것은 2021. 2. 20.경부터이고 2021. 3. 3.경 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피고 B가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별지]**부동산의 표시****1.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H

[도로명주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I

건물내역 조적조(세멘벽돌)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84.95㎡

2. (토지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H 대 301㎡. 끝.

